

#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

## 기관추천 특별 공급 관련 안내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는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청약 미접수시 당첨자선정 및 계약 불가)
-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 포함)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으며,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 접수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약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를 충분히 안내, 재검중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 사업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 홈페이지 \(http://seokjeong-parkdream.com\)](http://seokjeong-parkdream.com)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산12-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4층, 지상21~29층, 11개동 아파트 1,296세대 중 기관추천 124세대
- 입주예정시기 : 2025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전용 85㎡이하 주택건설량 10%범위)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배정 세대수 (예비)	입주 예정 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 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80A	80.9979	25.7682	106.7661	51.0529	157.8190	8 (24)	‘25년05월 (예정)
	80B	80.9903	25.4704	106.4607	51.0482	157.5089	14 (42)	
	84A	84.9882	26.6683	111.6565	53.5680	165.2245	15 (45)	
	84B	84.9948	26.8079	111.8027	53.5722	165.3749	31 (93)	
	84C	84.9948	26.6097	111.6045	53.5722	165.1767	19 (56)	
	84D	84.9867	26.3172	111.3039	53.5670	164.8709	37 (111)	
	계						124 (372)	

- ※ 배정세대에 대한 추천 및 예비 추천 배정세대수에 맞게 대상자를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수치는 예비입주자 배정세대로 300%(소수점 절상) 적용하였습니다.
- ※ 상기 주택공급면적 및 세대배정은 평택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입주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단위 : 세대)

구 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예비)							
		80A	80B	84A	84B	84C	84D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4)	2(6)	2(7)	4(14)	3(8)	5(16)	17 (55)	
	장기복무세대군인	1(3)	1(6)	2(6)	3(13)	2(8)	5(15)	14 (51)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1(3)	2(6)	2(6)	4(13)	2(8)	5(16)	16 (52)	
	중소기업근로자	1(4)	2(6)	2(7)	4(13)	2(8)	5(16)	16 (54)	
	철거민	1	1	1	1	1	1	6	
	장애인	경기도	1(4)	2(6)	2(7)	5(14)	3(9)	6(16)	19 (56)
		서울특별시	1(3)	2(6)	2(6)	5(13)	3(8)	5(16)	18 (52)
인천광역시		1(3)	2(6)	2(6)	5(13)	3(8)	5(16)	18 (52)	
소계		8(24)	14(42)	15(45)	31(93)	19(57)	37(111)	124 (372)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분양일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22.09.16.(금) (예정)	서울경제 및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 홈페이지 ( <a href="http://seokjeong-parkdream.com">http://seokjeong-parkdream.com</a> )
• 견본주택 개관 (예약제 운영 예정)	2022.09.23.(금) (예정)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2-8번지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 견본주택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약제로 운영예정 *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견본주택 홈페이지 및 예약제 운영예정)
•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2.09.26.(월) (예정)	인터넷 청약접수(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2022.10.06.(목)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앱에서 개별조회

※ 상기일정은 업무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 공인인증서 필히 지참, 은행창구 접수 불가)

II

특별공급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16.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등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단, 중소기업근로자 및 군인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청약예금 : 전용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의 전용면적	거주지역	평택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	광역시(부산광역시 제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85제곱미터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한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함)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건본주택에서 확인가능 하며, 확인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여부,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명단으로 관리되며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대주 및 주택소유여부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 가능하시므로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Ⅲ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신청이 원칙이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IV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집공고일 전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로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 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2.09.16.(금)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 (<http://seokjeong-parkdream.com>)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16.(금)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 V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 조감도 및 사업개요

조감도	사업개요	
	단지명칭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
	대지면적	50,751㎡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산12-5번지 일원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축규모	지하 4층, 지상 29층 / 11개동
	타입	전용 80㎡A / 80㎡B / 84㎡A / 84㎡B / 84㎡C / 84㎡D / 110㎡
	세대수	총 1,296세대

※ 상기 조감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홍보관 위치

홍보관/견본주택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2-8

YouTube 화성파크드림 TV

NAVER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

Ch 카톡에서 화성파크드림 채널을 추가하세요

80m<sup>2</sup>/84m<sup>2</sup>/110m<sup>2</sup> 총 1,296세대

분양  
문의 **1533.0525**

###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 / 추천양식

타입	번호	유형	시군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 배정 세대수에 맞게 추천인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예비추천인 명단도 동시에 추천 바랍니다. (예비추천인 명단 배정시)
- ※ 예비추천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시 별도 순위는 부여하지 않음.
- ※ **2022.09.23.(금) 오후 3시까지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회신을 요청**드리며, 기간 내 미 통보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